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791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2. 1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12. 1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2. 12. 26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정사유

○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 구분)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3. 주요골자

가.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안 제1조)

나. 특별회계 수입 및 세출(안 제2조)

다. 회계의 수입지출에 따른 일반회계 예(안 제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건은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정한바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하수의 배제와 처리를 위한 하수관거설치,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운용 · 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고성군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제정 조례안의 조목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2. 12.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고성군의회의견서

제 목	배둔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사항 의견청취의 건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의 견

본 의견 청취의 건은 1997년5월17일 최종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된 배둔도시계획을 이후 도시기능의 확장과 주변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장래 도시개발 여건수용과 도시기능의 미래상 구현을 위해 현실여건을 반영한 실현가능한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각 생활권의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므로서 군민생활의 편익도모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도시 계획 재정비 입안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에 도시계획 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비 입안내용은 전체 도시계획 구역의 변동은 없으며, 구역내 용도지역이 변동된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 또는 제1종 ·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되었으며, 일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므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래 도시 개발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고, 도시계획 시설부분에는 교통시설 변경으로 도로 일부의 선형변경이 있으며, 자동차 정류장 용도지역(축소) 변경이 있음.

배둔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사항 의견청취의 건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한 입안검토서 내용중 자동차정류장 시설의 규모 축소 부분을 제외하고는 입안검토서 내용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며, 자동차 정류장 규모축소 부분에 대하여는 군민으로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있게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함.

2002. 12. 26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 태 훈